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423호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이 일부 과거 법령을 인용하거나, 폐지된 표준을 참조토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유효한 법령과 표준을 준수하도록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데이터 교환형식을 현재 유효한 표준인 지리마크업언어로 수정함
(안 제5조)
- 나. 지형지물 코드를 현재 유효한 표준인 수치지도 지형지물 코드 표준으로 수정하고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해야 할 경우 現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도록 함(안 제6조)
- 다. 위치의 기준을 現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을 따르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4월 15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국토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담당서기관 : 조은혜, 전화 : 044-201-3465)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우) 30103)